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: 2000.12.20

제 출 자: 김완규의원외6인

1. 주 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- 나. 심사기간은 2000. 12. 26, 12.29, 2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제 획

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

- 평창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-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
-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읍·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- 평창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- 평창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00년 12월 26일, 12월 29일 2일간으로 한다.

4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

- 이경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
우강호의원, 김진석의원.